

「우리 농식품 신 시장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한」

2017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 신청자 모집 공고(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해외 신규·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선호도를 제고하고 향후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하고자 2017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해외유통업체내 숍인숍(shop in shop) 등 현지 사정에 적합한 형태의 안테나숍(antenna shop)을 설치·운영하여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선호도를 제고하고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 기반 확충

2. 사업기간 : '17년 1월 ~ 11월까지 9개월 내외(최소 3개월 이상)

3. 사업내용 : 안테나숍 설치 운영 국가군을 대상으로 한국식품 전용 안테나숍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안테나숍 설치 및 운영 전반업무 수행

- 안테나숍 설치장소 임차·장식, 우리 농식품의 현지 매장 공급 및 판매 등 안테나숍 운영(수입·통관 일체 포함)
 - * 단, 자사제품 수출업체 또는 이와 연계된 수입상(대리점)의 경우 해당제품 취급비율은 전체 제품수의 20%이내 원칙(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50%까지 확대 가능하나 제품리스트 제출)
 - * 교포시장 중심의 한인마트 등의 지역에는 설치 지양
 - * 현지 여건에 맞게 숍인숍, 로드숍, 팝업스토어 등 다양하게 설치 운영
- 시음, 시식행사 등 정기적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개최, 신규상품 마켓테스트 및 소비자 반응 피드백, 정보조사 등 공사 제시사업 수행

<해외 안테나숍 신규 설치 운영 대상 국가군(6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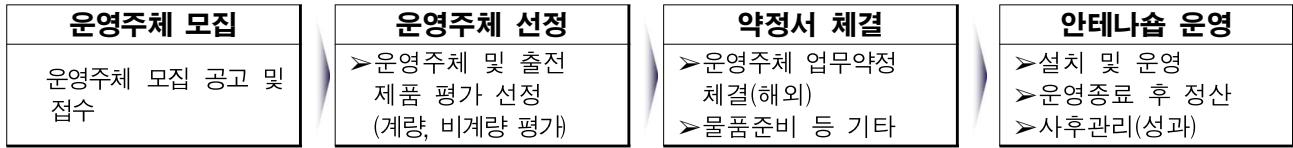
- ◇ 중 국(2개소) : 중국 내륙 23선 도시(청두, 우시 제외)
- ◇ 동남아(2개소) : 인도, 미얀마, 라오스 등(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제외)
- ◇ 중 동(1개소) : 사우디, 바레인 등 중동지역 국가(UAE 제외)
- ◇ 아프리카(1개소) : 남아공, 케냐 등 아프리카지역 국가

* 2017년 안테나숍 지속 운영지역(12개소) : 중국(청두, 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UAE(두바이, 아부다비), 폴란드, 슬로바키아, 페루, 파라과이

4. 지원사항 : 안테나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관련 경비 등 마케팅 추진 비용의 80%를 관련 증빙에 따라 사후 정산 지급(지원한도 붙임 참조)

5. 사업의무 : 공사 추천품목 및 제품 도입협조, 월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마켓테스트 등 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별도 약정서 체결)

6. 사업 추진절차



* 운영주체 선정 평가는 별도 평가위원(aT 및 유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구성하여 실시하되,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7. 신청대상

- 현지 수입업체 및 벤더, 현지수입업체 및 벤더와 연결된 국내 수출업체 : 해당지역 관할 aT 해외조직망 접수
- aT 해외조직망이 없는 아프리카 등 지역은 본사 접수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

해 외 조 직 망	연 락 처(TEL / e-mail)	관 할 지 역
베 이 징	86-10-6410-6120 beijingat@at.or.kr	중국 화북, 동북지역 및 섬서성, 하남성, 영하회족자치구 포함, 몽골
상 하 이	86-21-3256-6326 shanghaiat@at.or.kr	중국 화동, 화중 및 화남지역
청 뚜	86-28-8283-3376/86 chengdu@at.or.kr	중국 서북 및 서남지역
홍 쿡	852-2588-1614/16 hkatcenter@at.or.kr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광둥성
칭다오 물류	86-532-6696-2229 qingdao_logistics@at.or.kr	중국 산둥성
자카르타	62-21-2995-9032 jakarta@at.or.kr	싱가포르·말련·인나·호주·뉴질랜드
방 쿡	66-2611-2627-9 bangkok@at.or.kr	태국·미얀마·인도
아부다비	971-2-622-2195 abudhabi@at.or.kr	중동,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하노이	84-4-6282-2987 hanoi@at.or.kr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로스앤젤레스	1-562-809-8810 losangeles@at.or.kr	미국 서부·산악 및 중남미
파 리	33-1-4108-6076 paris@at.or.kr	유럽연합(EU) 지역, 이스라엘

8. 신청방법

☐ 신청접수

- 본사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불임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는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17년 1월 18일 18시까지

☐ 문의처 :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 신시장개척부 전명희 과장(02-6300-1547)

2017. 1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사 장

<붙임 1> 운영주체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약정서 등

2017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운영주체 신청업체 현황

☐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우)			전화 / FAX	
사업자 등록증번호				매출액	(‘16년) 백만원 (‘17계획) 백만원
입점예정 주요품목	등 00품목			한국농식품 수출입실적	(‘16년) 천불 (‘17계획) 천불
담당자		E-mail		휴대폰	

주)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 재무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 회사소개 등

구 분	내 용
회사소개	
주요 사업내용	
주 수출(입)품 특징	
수출(입)역사	
보유바이어(벤더)의 특성 등	
기타(자유기재)	

2. 사업 대상국·지역의 한국식품 보급 현황 및 과제(최소 한 장 이상)

☐ 사업 대상국·지역의 시장특성

-
-
-
-

☐ 한국식품 보급상황 및 유망 품목

-
-

☐ 한국식품 진출 확대를 위한 과제 및 대책 등

-
-

3. 안테나숍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 목적 및 목표

- 사업실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치목표 설정 및 명기

☐ 안테나숍 설치장소 관련

- 안테나숍 운영 예정기간 : ~ (개월) / 임대차 기간 : 년
- * 장기 9개월, 단기는 6개월 또는 3개월 이상
- 매장명(입점 설치장소) : 000 쇼핑몰, 000백화점, 000몰
- 매장 소재지 상권 특징, 접근성 등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안테나숍 설치장소 임대주 개요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우)			전화 / FAX		
담당자		E-mail		휴대폰		

☐ 안테나숍 구조 및 디자인 등(면적은 최소 9㎡이상 운영)

- 안테나숍 매장 위치도 또는 배치도, 구조 등
- 설치·장식 계획 : 컨셉트, 디자인 계획 구체적 명시(이미지 삽입 등)

☐ 프로모션, 판촉 계획 (세부적으로 기술, 별지 사용가능)

- 정기적 시음시식, 요리시연 등 이벤트 계획

-
-
-
-

- 현지 언론홍보 계획 등 구체적 작성

-
-
-

☐ 마켓테스트(신규제품 중심/추후 제품확정) 추진 관련 사항 등

- 마켓테스트 희망 품목 및 기타 제안사항 등
 - 수입규제, 식품검사 등 예상 문제점, 고려사항 및 대책 포함 작성
- * 마켓테스트 설문조사는 1제품당 100명 이상 실시

□ 수입상, 벤더 등 관련(해외 조직망 미 관할지역 신청한 국내 수출업체용)

- 현지 안테나숍 입점 관련 수입상(또는 벤더) 연계 계획
 - 원거리인 현지 안테나숍 운영을 위한 수입상(또는 벤더)의 역할, 업무계획, 회계 및 정산관련 자료 작성 및 준비 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술
 - 현지 연계 업체 개요

구 분	내 용
회사소개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식품 취급현황 등
주요 사업내용	
주 수출(입)품 특징	
수출(입)역사	
보유바이어(벤더)의 특성 등	
기타(자유기재)	

4. 제품 취급계획

☐ 한국 농식품 제품 취급계획

구분	제품 제조사	제품명	판매 예정가격 (현지화)	자사 취급 브랜드 해당 여부	신규품목 예정	비고
과자류 음료류 소스류 등 부류				해당시 “해당”	해당시 “해당”	신규
⋮	⋮	⋮	⋮	⋮	⋮	⋮

* 비고란은 기존 시장진입품목은 “기존”, 신규 시장 진입품목은 “신규” 표기

** 제조회사별 또는 브랜드별 제품은 전체 제품 수의 20% 이내 신청(단, 공사의 승인을 통해 50%까지 가능)

5. 예산계획서

지원항목	세부내용 및 산출단가	예산	
		현지화	원화(천원)
매장 임차비·설치비	(예시) ○임차비 : 단가 x 000일 =		
	○설치비 : 단가 x 000개 =		
			
	소계		
광고·판촉· 홍보비 (프로모션)	○광고비 : 단가 x 000회 =		
	○판촉비 : 000 x 000 = - 판촉요원 : 고용 단가 x 000일 - 홍보판넬 : 단가 x 00개 등		
	○홍보비 : 000 x 000 =		
			
	소계		
합계(사업비의 80%이내 기간별 한도설정)			

- 매장 임차비·설치비, 광고·판촉·홍보비의 실제집행 비용의 80%를 사후 정산
- 기간별 한도금액 : 연차별에 따라 차등지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지원 한도 (백만원)	3개월 이상 운영	150	-	-
	6개월 이상 운영	200	140	85
	9개월 이상 운영	300	210	125

* 안테나숍 운영규모,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배정하되, 매장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현지실사 후 최종 약정체결

2017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 약정서(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 이라 한다)와 2017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인 _____ (이하 “운영주체” 이라 칭한다)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aT”가 한국 농식품의 홍보효과 거양 및 신규 상품 마켓테스트를 위하여 (○국, ○○)에서 유통업체 내 Shop-in-Shop 등 현지 사정에 적합한 형태로 한국 농식품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한 안테나숍의 설치 및 운영을 “운영주체”에게 위탁하기 위함이다.

제2조 (사업 및 효력기간)

- ① 안테나숍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사업기간은 판매, 전시 등 안테나숍 운영이 가능한 _____ 년 월 일로부터 _____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사업기간 시작일은 실제 개소일 기준일을 적용 한다.)
- ② “운영주체”는 “aT”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에 안테나숍 개소 의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시 “aT”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의 효력은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aT”의 지원사항의 금액 지급 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3조 (사업내용) “운영주체”는 본 약정서(“운영주체”의 붙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포함)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① 안테나숍 설치장소 확보·운영기간 설정 등 전반적인 안테나숍 운영에 관한 현지 조율
- ② “운영주체”의 붙임 사업계획서 상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해 현지의 적법한 방법으로 수입·통관을 거쳐 수집 및 조달하여 매장 공급 및 판매
- ③ 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테나숍 설치장소 임차·장식 및 운영
- ④ 판매원, 판촉활동 요원을 통한 시음·시식행사 등 정기적 판매 촉진활동
- ⑤ 홍보선전물 제작·발송, 현지 언론 대상 홍보·광고, 오피니언 리더 섭외 등 홍보활동
- ⑥ “aT”가 의뢰한 상품의 앙케이트 조사, 바이어상담 등 마켓테스트 실시 및 이에 대한 결과보고
- ⑦ 기타 정보조사 등 “aT” 제시사업

제4조 (운영주체의 사업의무) “운영주체”는 제3조의 제반업무 추진을 위한 선량한 관리의무와 함께 다음 각 항의 사업의무를 진다.

- ① 안테나숍 설치 즉시 안테나숍 설치사진, 임대차계약서, 장치설치내역 현황자료를 “aT”에게 제출한다.
- ② 매월 한국농식품 수출(입)실적, 판매실적 및 관측활동 정기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제출(양식 1)한다.
- ③ 예산집행의 적정성 검토, 중간정산 등을 위해 “운영주체”는 제2조의 사업기간의 절반이 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사업관련 각종 지불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aT”에게 중간 비용집행 내역서를 제출(양식2)한다.
- ④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11월말 사업종료 시는 12월 10일까지) 사업관련 정산증빙자료 일체와 함께 최종 비용집행 현황서(양식2)를 “aT”에게 제출하고, 점포 설치 및 운영방법, 판매성과, 정보수집 등에 의한 성과·과제도출, 마켓테스트 결과, “운영주체”의 종합의견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양식3)를 1개월 이내(11월말 사업종료 시는 12월 10일까지) “aT”에게 제출한다.
- ⑤ “운영주체”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aT”의 추천 품목 및 제품의 도입과 마켓테스트, 정보조사 등 “aT”의 제시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마켓테스트 관련 설문조사 실시 시에는 1제품 당 최소 100인 이상 실시한다.
- ⑥ “운영주체”는 동조와 관련하여 “aT”의 사업점검 등 제반사항에 관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운영주체”는 사업수행 과정에 있어 인허가, 과대, 과장, 허위내용, 초상권, 지적재산권 및 시음·시식 등과 관련되어 야기된 민·형사·행정 및 기타 모든 책임은 “운영주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aT”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⑧ “운영주체”는 안테나숍을 통해 정식 통관·수입된 한국식품에 대해 홍보, 판매를 해야 하며, 공산품 등 기타제품의 홍보, 판매 등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aT는 사업지원 취소 등의 어떠한 재재를 “운영주체”에 가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주체의 사업의무 변경 및 제재사항)

- ① “운영주체”가 제출한 ○○○ “2017년 안테나숍 운영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3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aT”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aT”는 안테나숍 운영기간 중에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운영주체”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와 동 약정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지원금 감액 등 제재할 수 있다.

- ③ “운영주체”가 제4조의 사업의무를 불이행할 시, “aT”는 서면으로서 “운영주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aT”의 시정요청에도 10일 이내에 “운영주체”가 시정하지 않을 시, “aT”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계약해지 또는 제6조의 지원사항을 미지원 또는 감액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aT”가 판단하는 경우 “aT”는 “운영주체”의 사업의무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운영주체”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사업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aT”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의 발생비용 지원비율을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적용한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aT”가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기간(진행)	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 이상
지원한도	50%	60%	70%	80%

- ⑤ 제2항 및 3항에 의하여 “aT”가 계약해지 또는 제재를 가한 경우와 제4항과 관련하여 “운영주체”는 이에 대해 “aT”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사업비 정산)

- ① “운영주체”는 본 약정서의 붙임 운영계획서 상의 사업추진을 위해 제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비용의 80%인 한화(韓貨) 원 이내에서 “aT”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aT”의 증빙 확인을 통해 이상이 없을 시 정산·지원 받는다.
- ② 정산은 “운영주체”의 자체자금으로 우선 사업운영 후 “aT”의 사업정산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안테나숍 운영매장 임차료 및 장치비 등 초기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의 80%범위 내에서 증빙자료 확인 후 조기 정산 받을 수 있다.
- ③ “운영주체”는 제4조 제③항 절차에 의해 “aT”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집행금액의 80%이내에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운영주체의 자금 부담으로 공사에 요청할 경우 분기별 1회 중간정산 실시 가능하다.
- ④ “aT”는 “운영주체”가 제출한 자료 중 “aT”의 “2017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 관련 사업비 정산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집행금액 증빙자료 제출 시에는 은행 송금확인증을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지출 등 은행 송금확인증을 제출하지 못 하는 지출 항목의 경우에는 사전에 aT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산항목별 제출 의무 증빙자료는 세부 사업계획서 및 정산기준 참조

※ 특히 매장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판촉요원, 관리인원)는 필히 은행 송금확인증 제출

- ⑤ 사업비 정산 시 원화로 지급받는 업체의 환율은 사업기간 동안의 외환은행 최고고시 전신환 매도율 평균 환율을 적용하며, 초기·중간 정산 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산시점까지의 외환은행 최고고시 전신환 매도율 평균 환율로, 중간정산추진 후 최종정산시는 중간정산추진일 이후부터 최종정산시점 까지의 외환은행 최고고시 전신환 매도율 평균 환율을 적용을 적용한다.

<운영주체 계좌정보>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SWFITCODE :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등) “운영주체”는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aT”는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제6조의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계약파기) “운영주체”가 “aT”와 약정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할 경우 차년도부터 “aT”는 2년간 “aT”가 지원하는 안테나숍 운영, 자금 및 국제박람회, 판촉전 참가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선정제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제9조 (특약)

- ① “운영주체”는 본 약정서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매하는 한국산 농식품의 판매가격은 현지에서 기존 상거래 질서를 해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며, “aT”는 현지 상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판매가격으로의 조정을 “운영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는 “운영주체”의 책임 하에 해결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약정서의 효력은 “aT”와 “운영주체”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② 본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 “aT”와 “운영주체”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분쟁사항 발생시 “aT” 소재지역 관할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본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약정서 2통을 날인하고 “aT”, “운영주체”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17. .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운영주체”

- * 첨부
1. (양식 1) 월별 해외 안테나숍 운영 결과 보고서
 2. (양식 2) 해외 안테나숍 운영 (중간·최종) 비용 집행 현황
 3. (양식 3) 2017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 중간 결과 보고서
 4. (양식 4) 2017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 최종 결과 보고서
 5. (참고 1) 2017년 안테나숍 운영관련 사업비 정산기준
 6. (참고 2) 2017년 안테나숍 운영주체 역할

(양식 1)

2017년 ()월 해외 안테나숍 운영 결과 보고서

1. 운영 개요

- 운영국가(도시) :
- 운영제품 : 외 제품
- 운영기간 :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일간)
- 운영장소 :

점포명	소재지	전화	비고

☐ 운영주체는 안테나숍 설치하는 즉시 관련 현황자료 제출

- 안테나숍 설치사진, 임대차계약서, 장치설치 내역 등

2. 수출(입) 실적 및 판매실적

- 안테나숍 운영관련 해당월 수출(입)실적

제품		(입) 물량(kg)	수출(입)금액 (US\$ 또는 현지화)	비 고
제조사	제품명			
계				

* 수출(입)신고필증, B/L 등 확인가능한 수입서류 사본 첨부 / 안테나숍 운영기간 전후 1개월 이내 인정

- 판매실적

제품		판매량 (개/CTN/kg)	소비자 판매가	매출액	비 고
제조사	제품명				
계					

3. 금월 추진 홍보·판촉행사 (행사 세부내용별로 상세작성)

- 판촉요원 활용 및 시식행사 결과, 마켓테스트 등
- 기타 이벤트 행사 결과 등

4. 소비자 반응 (부류(품목)별로 상세작성)

- 마켓테스트 실시 시 하였을 시 그에 대한 반응 등
-

5. 주요성과 (주요 유통매장 신규입점 품목수(리스트) 및 입점 매장 점포수 등)

-
-

6. 애로 및 건의사항

-
-

7. 행사사진

〈사진내용 간략 설명 기재〉	〈사진내용 간략 설명 기재〉

* 행사관련 동영상 자료 별도 제출

(양식 2)

2017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 (중간·최종) 비용 집행 현황

1. 비용 집행액 : _____ 현지화

구 분		집행금액	지 원 요청액 (배정액의 80% 이내 / 최종정산시 해당)	산 출 근 기
사업비	임 차 비			
	장 치 비			
	홍 보 비 - 매체광고 - 현수막, 포스터 - 전단지 등			
	인건비 - 판매직원 - 관측요원 고용비 - 통역요원 고용비			
	시식행사비 - 시식 물품대			
계				

* “별표1”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 첨부

2. 입금계좌(중간정산요청시, 최종 비용 집행 현황 보고시) :

* 계좌입금의뢰서 및 통장사본(법인명의) 제출

위와 같이 비용 집행 현황을 제출합니다.

2017.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귀중

(양식 3)

2017년 () 안테나숍 운영 중간결과 보고(10월말기준)

1. 운영 개요

- 운영국가(도시) :
- 운영제품 : 외 제품
- 운영기간 :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일간)
- 운영장소 :

점포명	소재지	전화	비고

- 안테나숍 운영사진

<외 부>	<내 부>	<시음시식>

2. 주요 운영현황

- ☐ 안테나숍 구조 및 디자인 등
 - 안테나숍 입점매장내 위치도 또는 배치도, 구조 등
 - 설치·장식 계획 : 컨셉트, 디자인 등 이미지 활용
- ☐ 안테나숍 홍보 및 판촉활동 등
 - 시음시식, 요리시연 등 판촉활동 및 광고 등 현지 홍보 사항 구체적 기술
 - 사진 등 이미지 자료 최대한 활용
- ☐ 안테나숍 언론보도 등 홍보실적
 - * 언론사명, 시기, 반등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주요 운영성과

- ☐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품목 입점, 거래처 발굴 등
- ☐ 신규 입점제품 수 및 제품명, 입점 대상처 구체적으로 명시

- 입점 증빙서류 확보 요망(입점정보 확인 가능한 것)
- ☐ 신규 거래처 확보의 개소수와 거래처 명 확보 요망

- 거래 계약 등 증빙 가능한 서류 확보 요망

신규 거래처명 (or 신규입점유통매장)	거래 시기(예정)	입점품목현황	제품명	매출현황(추정)
⋮	⋮	과자류 음료류 소스류 등 부류 등	⋮	⋮
총 00개	-	-	총 00개	총 000

- ☐ 안테나숍 주요 인기품목 및 사유
- ☐ 주요 인기품목 현황(사유 포함) / 수출확대 가능성 등

☐ 기타 품목별 소비자 반응조사 추가

- ☐ 유망품목에 마켓테스트 실시 결과(종합)
- ☐ 품목별 소비자 반응조사 등

- ☐ 안테나숍 운영자 초청 우수 신상품 설명회 연계 마켓테스트 추진 현황
- ☐ 제품내역 및 입점내역 등 내역(품목수, 입점금액 등 품목별 기재)

품 목	마켓테스트 추진기간	안테나숍 내 입점금액	신규거래처 입점금액	비고
합 계				

* 우수신상품 설명회 시 업체별로 선정한 마켓테스트 선정품목에 한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필수(수출입신고필증, 현지구매증(현지구매한 2차벤더에 한함) 등)

- 안테나숍 운영 관련 수출입 실적
- 안테나숍 판매 및 수출실적 동향 분석(코멘트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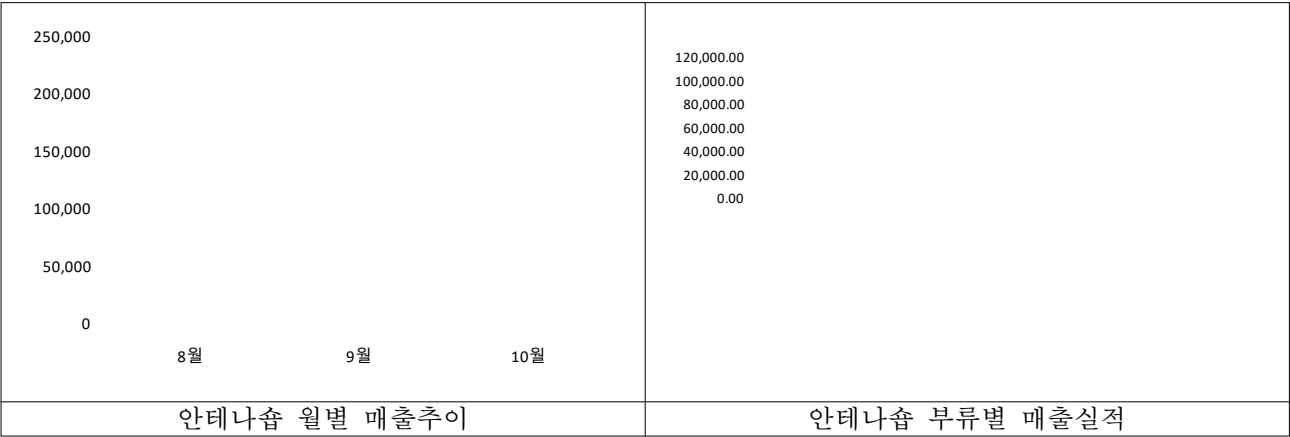
< 월별 수입 및 판매실적 >

항 목	8월	9월	10월	계
판매실적(RMB)				
수입실적(USD)				

<부류별 판매실적>

품목	8월	9월	10월	합 계	비고
소스류, 식자재					
수산가공(조미김, 소시지)					
씨리얼제품					
유제품					
면류					
과자류					
차류(유자차), 커피류					
음료류					
주 류					
인삼류					
합 계					

* 수출입 실적 및 제품별 세부 판매실적은 별첨



☐ 안테나숍 내 한국 농식품 제품 취급현황

구 분	품목명	제품 제조사	제품명	판매가격 (현지화)	자사 취급 브랜드 해당 여부	비고
1. 기존취급품목	과자류 음료류 소스류 등 부류				해당시 “해당”	
	총 00개					
2. 신규입점품목	⋮	⋮	⋮	⋮	⋮	
	총 00개					
총 계	00개 (1+2의 항목)					

* 제품 개개별 취급실적 필수작성으로 엑셀양식 등 별도제출 가능

* 신규품목 입점 사진 필수제출

4.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방안

☐ 안테나숍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 확장 계획

○ 신규 매장 확충 계획

☐ 향후 발전방안

○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5. 종합의견 (해당 항목은 관할 aT지사에서 작성 요망)

○ 안테나숍 사업에 대한 개선의견, 현 안테나숍 평가, 지속지원 검토여부 등 종합
의견 제시 요망

<첨부> 안테나숍 운영사진(매장 내외부, 시음시식 장면, 판촉요원 활동, 각종 이벤트 등

(양식 4)

2017년 []지역해외 안테나숍 운영 최종 결과 보고서

-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 시각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작성하고
- 판촉요원, 판매요원 운용시 일일 판매 일보 등을 작성케하여 바이어, 소비자 반응 구체적 작성
- 본 결과보고서 양식은 현지 실정에 맞게 다소 조정 가능

1. 운영 개요

- 운영국가(도시) :
- 운영기간 :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일간)
- 운영주체 개요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우)			전화 / FAX		
담당자		E-mail		휴대폰		

- 운영장소 :

점포명	소재지	전화	비고

2. 사업실시국의 농림수산물식품의 시장특성

3. 사업실시국의 한국식품 진출 상황

4. 본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중점 추진 사항

5. 안테나숍 설치 장소 및 구조, 디자인 현황

- ☐ 안테나숍 설치장소 관련
 - 안테나숍 운영 기간
 - 설치장소 : 주소(지도포함), 연락처, 입점매장명, 점포 소재 상권 특징, 접근성 등 구체

적으로 기술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 설치장소 임대주 개요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우)			전화 / FAX		
담당자		E-mail		휴대폰		

□ 안테나숍 구조 및 디자인 등

○ 안테나숍 입점매장내 위치도 또는 배치도, 구조 등

○ 설치·장식 계획 : 컨셉트, 디자인 등 이미지 활용

6. 판매촉진 활동 및 홍보 사항

○ 시음시식, 요리시연 등 판촉활동 및 광고 등 현지 홍보 사항 구체적 기술

○ 사진 등 이미지 자료 최대한 활용

7. 운영기간 중 전시·판매제품 수출(입) 실적 및 판매개황

○ 월별 판매 및 수출(입)실적

항 목	월	...	...	...	11월	계
판매실적(현지화)						
수입실적(USD)						

* 수출(입)신고필증, B/L 등 확인가능한 수입서류 사본 첨부 / 안테나숍 운영기간 전후 1개월 이내 인정

○ 부류별 판매실적

품목	월	...	...	11월	합 계	비고
과자류						
김치류						
소스, 식재료						
면 류						
조미김						
차 류						
음료류						
신 선						
합 계						

* 제품별 세부 판매실적은 별첨

8. 전체 품목 입점현황 및 신규입점품목 현황

☐ 안테나숍 내 한국 농식품 제품 취급현황

구 분	품목명	제품 제조사	제품명	판매가격 (현지화)	자사 취급 브랜드 해당 여부	비고
1.기존취급품목	과자류 음료류 소스류 등 부류				해당시 “해당”	
	총 00개					
2. 신규입점품목	⋮	⋮	⋮	⋮	⋮	
	총 00개					
총 계	00개 (1+2의항목)					

- * 제품 개개별 취급실적 필수작성
- * 신규품목 입점 사진 필수제출

9. 판매제품 및 마켓테스트 상품에 대한 현지소비자 · 바이어 반응 및 평가

- 제품별 바이어 및 현지 소비자 반응, 개선 필요사항 등 구체적 기술
- 마켓테스트 제품에 대한 바이어 및 현지 소비자 반응, 개선 필요사항 등 구체적 기술

10. 안테나숍 외 신규거래처 등 주요성과 발굴 현황

신규 거래처명 (or 신규입점유통매장)	거래 시기(예정)	입점품목현황	제품명	매출현황(추정)
⋮	⋮	과자류 음료류 소스류 등 부류 등	⋮	⋮
총 00개	-	-	총 00개	총 000

11. 기타 공사 제시사업 추진 사항

12. 본 사업성과에 대한 고찰

- 유통업체 등 주류시장 신규 입점 성공 제품
 - 입점까지의 경위 등 구체적 기술
- 바이어 관심 집중 상품 및 현재 상담 진행 상품
- 현지 새로운 트렌드 등 신규 취득 정보 등

13. 본 사업 실시 과정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14. 운영주체 종합의견(한국농식품 시장 확대 방안 포함)

15. 상담, 내방 주요 바이어 연락처

16. 안테나숍 운영결과 우수사례(A4 3장 이내로 작성제출)

- 현지 마켓테스트 추진결과 및 신규입점품목 확대, 신규거래처 발굴등을 중심으로 작성요청

(참고 1)

2017 해외 안테나숍 운영관련 사업비 정산기준

□ 공통기준

- 모든 사업비용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집행된 경비에 한함
- 사업비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시 대금입금 확인서 등 추가 제출(“aT” 요구시)
 - 각국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세금계산서등)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입금 또는 송금확인서(정산) 등 확정 증빙 첨부
 - * 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확정증빙 첨부 불가시 aT 본사 협의, 승인 후 증빙 인정 가능
- 해외 현지 화폐 집행 비용은 운영기간 동안의 한국 외환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송금 평균환율 적용
- 아래 항목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공사와 협의, 승인 후 추진

□ 항목별 정산기준

지원 항목	정산기준	증빙서류																												
총괄 지원 한도액	○ 총괄 지원 한도액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1년차</th><th>2년차</th><th>3년차</th></tr><tr><td rowspan="3">지원 한도 (백만원)</td><td>3개월 이상 운영</td><td>150</td><td>-</td><td>-</td></tr><tr><td>6개월 이상 운영</td><td>200</td><td>140</td><td>85</td></tr><tr><td>9개월 이상 운영</td><td>300</td><td>210</td><td>125</td></tr></table> ▶ 운영기간 및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 차등화 * 동일지역 최대 2년, 필요시 1년 연장검토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지원 한도 (백만원)	3개월 이상 운영	150	-	-	6개월 이상 운영	200	140	85	9개월 이상 운영	300	210	125	○ 약정서상 운영기간과 실제 운영 기간이 다를 경우 실 운영기간 기준으로 지원한도액 적용 <table><tr><td>사업기간 (진행)</td><td>50 % 미만</td><td>50~70% 미만</td><td>70~90 % 미만</td><td>90 % 이상</td></tr><tr><td>지원한도</td><td>50%</td><td>60%</td><td>70%</td><td>80%</td></tr></table>	사업기간 (진행)	50 % 미만	50~70% 미만	70~90 % 미만	90 % 이상	지원한도	50%	60%	70%	80%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지원 한도 (백만원)	3개월 이상 운영	150	-	-																										
	6개월 이상 운영	200	140	85																										
	9개월 이상 운영	300	210	125																										
사업기간 (진행)	50 % 미만	50~70% 미만	70~90 % 미만	90 % 이상																										
지원한도	50%	60%	70%	80%																										
임차비	○ 판촉행사 장소 임차비 및 관련수수료 - 품목 등록비, 점포 listing fee 등 포함 - 전기, 수도, 가스 등 안테나숍 운영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지원 * 장치비 설치기간 중 임차료 실질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단, 오픈일 최대 1개월까지 만을 설치준비 기간으로 인정)	○ 실질 발생비용 적용 ○ 유통업체(매장) 발행 증빙서 또는 임차계약서(금액표시) ○ 기타 관련 증빙자료																												
장치비	○ 시음·시식대, 매장 장식·설치비, 이벤트 행사시 특별 장치 설치비, 비품임차비 * 매장 장치비 지원은 동일지역 1회에 한함	○ 실질 발생비용 적용 ○ 제작실물 견본(사진) 및 관련 증빙서																												
홍보비	○ 현수막·포스터·전단지 등 홍보선전물	○ 실질 발생비용 적용																												

지원 항목	정산기준	증빙서류								
	제작·발송, 현지 언론 등 매체 대상 홍보·광고, 오피니언리더섭외, 요리사섭외, On-line 홍보 등 홍보활동비용 ※ 홍보비 중 판촉행사, 언론매체의 경우 건당 원화 20백만원 이상의 홍보비 지출시 관할지사와 사전 협의 후 추진	○ 광고게재지, 제작실물 견본(사진) 및 관련 증빙서								
인건비	○ 판매원 및 판촉요원, 통역 고용비 ○ 인건비 전체 지원한도 <table><tr><td>사업기간</td><td>3개월 이상</td><td>6개월 이상</td><td>9개월 이상</td></tr><tr><td>지원한도 (백만원)</td><td>15</td><td>30</td><td>45</td></tr></table> ※ 총괄한도액처럼 사업의무 기간이 변동될 시에는 인건비관련하여 약정 제 5조 4항에 의거 지원비율한도에 따른 감액 추진	사업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지원한도 (백만원)	15	30	45	○ 실질 발생비용 적용 ○ 대금영수증, 신분증사본, 판촉활동 사진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국가별 지원한도 기준(1일) · 일본 : 25천엔/인 이내 · 미주 : US\$200/인 이내 · 유럽 : €200/인 이내 · 중국·동남아 : US\$150/인 이내 · 기타지역 : US\$200/인 이내
사업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지원한도 (백만원)	15	30	45							
시식 행사비	○ 시식과 관련한 시식 물품비, 소모성 경비 (종이컵, 접시 등) ○ 지원한도 <table><tr><td>사업기간 (개월)</td><td>3개월 이상</td><td>6개월 이상</td><td>9개월 이상</td></tr><tr><td>지원한도 (백만원)</td><td>6</td><td>12</td><td>20</td></tr></table> ※ 총괄한도액처럼 사업의무 기간이 변동될 시에는 시식행사비 관련하여 약정 제 5조 4항에 의거 지원비율한도에 따른 감액 추진 ※ 우수신상품 연계 마켓테스트 추진시 해당제품 수입내역 증빙제출에 한해, 시식행사비 지원한도와 별도로 5백만원 내 추가 지원한도가능	사업기간 (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지원한도 (백만원)	6	12	20	○ 실질발생 비용 영수증 ○ 마켓테스트결과, 설문지, 관련행사 사진
사업기간 (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지원한도 (백만원)	6	12	20							
기 타	○ 해당국 수입식품 성분분석비 ○ 안테나숍 운영주체 현장 점검비(분기 1회) - 항공비에 한함 ○ 안테나숍 매장내 인터넷 설치비, 사용료	○ 신규진입 품목, 해당기관 발행증빙서 ○ 항공비용 영수증 ○ 설치비, 사용료 증빙 영수증								
공통사항	○ 은행간의 거래내역 등 송금증빙서 필수제출 ○ 초기투자 고정비용은 월할로 나누어 사후정산지급 ○ 부가세 환급이 되는 국가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산지원									
신청불가 경비	○ 안테나숍 운영에 필요한 한국 농식품 수입·운송에 관한 경비 ○ 음식비, 교통비, 통신비, 기계·가구 구입비 ○ 기타 운영주체가 실시하는 다른 사업과 구별할 수 없는 경비 등 본사업과 연관성을 구별할 수 없는 경비									

2017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 역할

□ 안테나숍 장소확보 및 설치

- 유동인구가 많고 사업성과 제고가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 하되, 현지 여건에 맞는 안테나숍 운영형태 선정
 - 안테나숍 운영품목이 현지 유통매장에 신규 입점될 수 있도록 현지 유통매장 내부 또는 인근에 설치 추진(권장)
 - 현지 고객 방문유도를 위해 한국식품 전용매장 이미지 구현, 인테리어 및 제품진열 차별화 추진(K-Food Shop 등)
- 안테나숍 설치하는 즉시 관련 현황자료 제출
 - 임대차계약서, 장치설치 내역, 안테나숍 설치사진 등 증빙 자료

□ 안테나숍 운영품목 조달 및 공급

- 운영주체가 취급하고자 운영품목을 직접 수집 및 조달하여 안테나숍에 공급하되 특정 브랜드 위주의 제품비중 높지 않도록 주의
- 안테나숍 운영품목 조달 및 공급실적 제출
 - 월별 운영결과 보고시 한국식품 수출입실적 등 증빙자료 첨부

□ 정기적인 시음·시식 등 마켓테스트 실시

- 소비자 반응조사 등을 통한 한국식품 진입가능성 및 수출전략 모색
- 품목선정, 설문항목 등 마켓테스트 실시계획은 안테나숍 운영주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관할 해외aT센터와 협의 추진

<안테나숍 마켓테스트 실시(안)>

- ▶ 시기 및 장소 : 안테나숍 운영기간 중 시음·시식 코너
- ▶ 대상품목 : 안테나숍 주요 품목 중 10개 품목 이상(상반기 5, 하반기 5)
- ▶ 조사대상 : 매장 방문고객, 유통매장 관계자, 바이어 등
- ▶ 조사내용 : 제품인지도, 시음·시식 후 반응(맛, 구매의향 등), 지역 적합성, 기타 고객의견 등
- ▶ 조사방법
 - 1개 품목당 100명 이상 실시하여 데이터 유효성 확보
 - 성별(남녀), 연령층, 직업 등을 인구통계학 분석
 - 맛, 가격, 품질, 구매의향 등 소비자 기호도 평가
 - 조사 응답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 내방객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이벤트 실시

- 현지신문, 전단지 등 현지 매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
- 일별 또는 주간별 시음·시식 행사 등 주요 이벤트 안내
-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판매전략 수립
 - 내방고객 대상으로 판촉물 배포, 한국식품 요리시연·체험, 한국 식품 구입고객에 대한 주기적 이벤트 홍보 DM발송 등

□ 안테나숍 운영보고서 제출

- 매월 안테나숍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판매실적, 한국식품 수출입 실적, 소비자반응, 이벤트, 주요성과 등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정해진 기일 내)
 - 안테나숍 설치 및 운영방법, 판매성과, 소비자 반응, 유통매장 내 신규 진입 품목 등 주요성과와 안테나숍 운영주체의 종합의견 등

□ 기타 정보조사 등 비정기적인 공사 제시 업무 수행